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7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 7. 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. 7. 10.
- 다. 상정일자 :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7. 7. 1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보건과장 김 윤 경

가. 제안이유

학교보건법에서 일부 분리되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법령 및 변경된 용어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 개정

-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6조)

·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

2)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(4개 조문)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5조),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6조),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(안 제7조), 흡연구역의 설치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시행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